

< 수시 공시 >

2013.02.12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 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 가격	발생 일자	50 억 미만 시작일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(채권혼합)	3,078,777,467	3,145,450,858	1021.66	2013.02.09	2011.03.10.
2	신영업종우량주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,775,124,541	4,862,590,681	1018.32	2013.02.11	2012.09.12.
3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형	1,205,335,710	1,126,803,264	934.85	2013.02.11	2011.05.12.
4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1형	22,519,585	20,790,889	923.24	2013.02.11	2011.05.12.
5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2형	577,541,505	601,048,253	1040.7	2013.02.11	2011.05.12.
6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e형	18,743,488	17,505,848	933.97	2013.02.11	2011.05.12.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